

[사 건 명] 행심 2016-31

학교폭력에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청구

□ 청구인 : ○○○

□ 피청구인 : ◇◇초등학교장

[주 문]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.

[청구취지] 피청구인이 2016. 8. 9.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『학급교체 등』 처분을 취소한다.

[재결이유]

1. 당사자 관계와 신청의 적법 여부

이 사건의 청구인 적격과 피청구인 적격은 문제가 없으며, 청구기간과 방식에도 문제가 없습니다.

2. 사건의 경위

가. 2016. 6월 경 부터 교실에서 5학년 같은 반 학생들이 ▽▽▽, ●●●, ◇◇◇이 ○○○○을 지속적으로 놀리거나 괴롭히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다.

나. 청구인은 종이에 ○○○의 이름을 붉은 글씨로 써서 저주하고 놀렸으며, 가짜 고백편지를 써서 책상에 놓았다.

다. 2016. 8. 4.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, 청구인과 ∇∇∇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고, ◇◇◇은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처분을 받았다.

라. 청구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2016. 9. 5. 상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.

### 3. 사건의 쟁점

가. 청구인 주장

- 1) 청구인과 ∇∇∇, ◇◇◇은 친한 친구로 같이 어울려 다니는 급우인데, ∇∇∇와 ○○○이 사이가 좋지 않아 담임교사에게 짝 교체를 네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, 청구인이 ∇∇∇의 어려움에 같이 대응을 한 행동이 놀리고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표현되었다.
- 2) 청구인이 종이에 붉은 글씨로 ○○○의 이름을 쓴 것은 저주가 아니라 단순한 재미로 작성한 것이며, 그 종이는 바로 버렸다.
- 3) 놀릴 목적으로 써서 ○○○의 책상에 올려 놓은 고백편지는 청구인이 쓴 것은 아니지만 장난치는 학생들과 동조한 점에 대하여 반성한다. 급우를 놀리고 소문을 퍼뜨린 것은 진심으로 반성하지만 처분이 과하고, 학급교체 조치로 인한 청구인의 정신적 충격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해 주기 바란다.

#### 나. 피청구인 주장

- 1) 청구인은 ▽▽▽의 어려움을 보고 대응했다고 하나 대응방법이 적절치 못하였으며, 3명의 학생이 ○○○을 험담 했고 서로의 행동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집단괴롭힘으로 판단하였다,
- 2) 청구인이 붉은 글씨로 써서 저주했다는 것은 다른 학생들의 진술서와 학폭위에서 청구인에게 붉은 색으로 쓴 이유를 묻자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하였고, 저주의 말도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 없었다.
- 3) 청구인은 ○○○을 놀리고 웃음거리로 만들 목적으로 가짜 고백편지를 이용했으며, 진술서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. 이에 학폭위에서는 ○○○과 분리가 필요해서 내린 조치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.

## 4. 판단

### 가. 사실관계와 행위에 대한 판단

위 사건의 경위와 관계자 주장 등 쟁점에 대하여 토의하고 판단해 보건대, 청구인과 ▽▽▽, ◇◇◇은 매우 친하게 어울려 다니며 ○○○에 대하여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계속하여 모욕과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등 가해행위를 하였고, 이러한 행위는 ○○○이 남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의 학교폭력 행위로 보이는 바,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옆에 붉은 글씨로 “○○○ 죽어”라고 써서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이를 보게 만들거나, 피해 학생의 얼굴을 그려 놓고 뼈가 으스러져 죽어라고 써서 저주하는 등 ○○○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저질렀으며,

#### 나. 개인적 갈등인지 집단적 괴롭힘인지 여부와 단순 방조 여부

청구인은○○○와의 개인적 갈등이라고 주장하나, 위 3명이 항상 어울려 다니고 상호의 행동을 서로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한 명의 행동으로 인하여 서로가 자극을 받는 등 집단적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크며, 청구인은 ○○○와 ∇∇∇의 갈등에 ∇∇∇를 방조한 것일 뿐이라고 하나, ○○○와 직접적 갈등도 없으면서 3명이 항상 모여 다니며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 괴롭힘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, 그로 인해 피해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상당히 인정되며 (4개월 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진단서),

다. 상당 기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○○○의 정신적 피해 상태를 감안할 때, 청구인 등과 ○○○의 물리적 분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점에서 원 처분이 위법, 부당하여 취소, 변경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아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합니다.

#### 5. 결론

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